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 · 한창민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23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서왕진 · 민형배 · 한창민
정춘생 · 이해민 · 조계원
김문수 · 이개호 · 김정호
양문석 · 강경숙 · 차규근
신장식 · 허종식 · 박은정
허성무 · 임호선 · 백선희
이병진 · 남인순 · 정일영
정혜경 · 강득구 · 윤종오
김준형 · 전종덕 · 용혜인
문정복 · 김선민 · 김재원
소병훈 · 최혁진 · 황운하
손 솔 · 김동아 · 박홍근
정태호 의원(37인)

제안이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음. 이는 단순히 한 권력자의 탄핵을 넘어,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권력 유지와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이 내린 사법적 단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국민 주권’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자행한 각종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특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부패한 검찰 권력은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 수백 건에 이르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언론계·노동계·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까지 자행했음.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수사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함. 또한 검찰권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는 엄정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심을 포함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오남용의 의혹이 있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의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범죄의 의혹이 상당함에도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안 제5조).

라. 위원회가 진상조사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5조, 제18조).

마. 조사대상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또는 사건관계인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위원회는 안 제20조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조사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개인정보, 통신이용자정보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청취 등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4조).

아.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할 수 있음(안 제26조, 안 제30조).

자.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조사 활동을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31조).

차.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조사 결과 또는 진상조사 불능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상조사 신청인 및 조사

대상자·참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6월 이내에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1조)

타. 국가는 검찰권 오남용자에 대하여 법적·정치적 조치 및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울러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4조, 안 제46조, 안 제47조).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 의 진상을 조사하여 윤석열의 검찰권 오남용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오남용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조사의 대상)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의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3. 범죄의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4. 기타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 각 호의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개시한 2019. 7. 25.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2025. 4. 4.까지 수사개시된 사건들에 한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윤석열에 의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제3호의 진상규명결정 결과에 따른 책임 및 피해회복방안 제시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확정판결과 진상조사의 관계)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상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한 진상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확정판결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순서의 정당 2곳이 추천하는 각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

라 추천하지 않은 인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추천된 위원이 6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24조에 따라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조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연장된 조사기간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조사사건

의 검찰권 오남용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의 검찰권 오남용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조사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조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조사의 개시

제20조(진상조사 신청 등) ① 제2조 조사대상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또는 사건관계인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람은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

아 청원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관계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 제2항 규정에 의한 청원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청의 방식) ① 제20조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조사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조사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조사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상조사 신청 내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인 경우

4.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3조(진상조사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이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조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의 진행

제24조(진상조사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2, 제83조의 3 규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상조사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또는 직원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⑪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진상조사대상자가 현직 검사인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26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 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4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24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0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4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조사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상조사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3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위원회가 조사 중인 진상조사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

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3절 조사의 종결

제33조(진상조사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조사가 된 경우 진상조사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조사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조사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조사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하 결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결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인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진상조사결정의 처리) 위원회가 진상조사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의뢰, 소속기관장에 대한 징계요구, 국가에 대한 피해자 피해회복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절 조사절차상 관계인에 대한 보호

제37조(변호인의 진상조사 참여·조력)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진상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인 변호인이 진상조사대상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상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진상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8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진상조사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조사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4조의 조사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조사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조사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조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41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상조사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검찰권 오남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같은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취소조치를 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8조(검찰권의 오남용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진상조사대상 사건에 관하여 검찰권의 오남용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존속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41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급자로서 그 불응을 지시한 사람
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4.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

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형의 감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조사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

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10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6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